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1. 방문요양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2. 방문요양 이용시간당 금액

이용시간	수가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40% 경감 대상자 (9%)	60% 경감 대상자 (6%)
30분	16,940원	2,541원	1,525원	1,016원
60분	24,580원	3,687원	2,212원	1,475원
90분	33,120원	4,968원	2,981원	1,987원
120분	42,160원	6,324원	3,794원	2,530원
150분	49,160원	7,374원	4,424원	2,950원
180분	55,350원	8,303원	4,982원	3,321원
210분	61,670원	9,251원	5,550원	3,700원
240분	68,030원	10,205원	6,123원	4,082원

3. 등급 별 최대 이용 시간 및 횟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일 이용시간		4시간	4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월 이용횟수		31회	30회	26회	24회	21회
본인 부담금	일반 (15%)	316,350원	306,150원	215,870원	199,270원	174,360원
	경감 (9%)	189,810원	183,690원	129,530원	119,560원	104,620원
	경감 (6%)	126,530원	122,460원	86,320원	79,700원	69,740원

4.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 종류별(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고,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 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해 책정하며, 비급여 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 대상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상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의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여야 한다.